

폐수처리장에서의 질식재해 발생사례(5)

-오수정화조 내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-

우리 환경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에는 많은 유해·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쳐버림으로써 둘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지는 최근 발생된 환경오염방지시설관련 재해사례를 알려드림으로써 발생가능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. (편집자 주)

1. 재해개요

가. 발생일자 : 2000. 10. 9(월) 16:40경

나. 소재지 : 경남 창원시 ○○동

다. 사업장 : ○○○

라. 피재자 : 곽○○, 김○○, 심○○

마. 사고유형 : 오수정화조 내부의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 등으로 질식사망

바. 피해정도 : 사망 1명, 부상 2명

사. 발생개요

○ 오수정화조의 정기점검을 위해 재해자 곽○○이 내부로 들어가던 중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밖으로 올라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, 동료작업자와 인근 주민이 119 응급구조 요청 및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 곽○○을 부축하여 나오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곽○○은 사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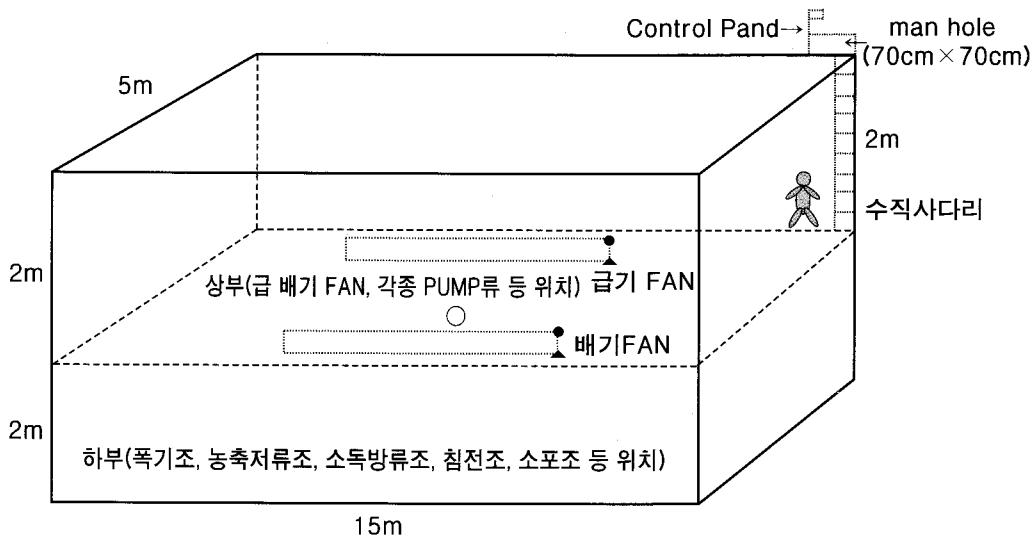
2. 재해발생경위

○ 재해발생장소인 오수정화조(깊이 4m, 가로 15 m, 세로 5m인 장방형 구조)는 상부에서 깊이 2m 지점 을 기준으로 상·하부로 구분되며 하부에는 폭기조, 침전조, 소포조, 농축저류조 등이 위치하고, 상부에는 급·배기 Fan, 각종 펌프류 등이 놓여 있음

○ 오수정화조의 방류펌프 및 정기점검을 위해 2000년 10월 9일 16시 20분경 곽○○이 오수정화조 맨홀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타고 정화조 상부바닥(맨홀입구에서 수직으로 2m 지점)으로 내려가 수평으로 약 15m 떨어진 방류펌프방향으로 걸어갔으며 동료작업자 심○○은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심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고 밖으로 나옴

○ 잠시 후(정화조 내부로 들어간 후 20~30초 경과 후) 곽○○이 수직사다리 위치로 와 위로 올라오려

〈산소결핍재해상황도〉



다 의식을 잃고 쓰러짐

- 동료작업자 심○○이 회사의 직원에게 상황을 신고하고 꽈○○을 구하려고 내려갔으나 혼자서 구출하기가 어려워 다시 맨홀 밖으로 나옴
- 인근 상가에 있던 김○○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119에 응급구조요청을 한 후 심○○과 함께 꽈○○을 구출하려고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 꽈○○을 부축하여 나오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짐
-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꽈○○, 김○○, 심○○을 구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꽈○○은 사망함
- 오수정화조(약 40,000mm × 15,000mm × 5,000mm)는 맨홀 출입구(약 70mm × 70mm)를 제외하고는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음
- 오수정화조에는 급·배기 Fan이 설치되어 있고 재해조사 시 급·배기 Fan이 가동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동료작업자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하였음.
- 재해조사 당시 피재자가 쓰러진 위치에서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
 - 산소(O₂) 농도 : 20.8 %
 - 가연성가스 농도 : 1 %
 - 황화수소(H₂S) 농도 : 10.7 ppm
 - 일산화탄소(CO) 농도 : 58 ppm으로 나타남

3. 재해발생원인(추정)

- 위의 측정결과는 재해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9시간이 경과한 후에 급·배기 Fan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로서 단시간 노출 시의 치사농도는 아니라 재해발생 시점에서의 정화조 내부는 이전(재해발생 일주일 전)의 정기점검 후 급·배기 Fan이 미가동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체류하고 이로 인한 산소결핍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

4. 동중재해예방대책

○ 기술적 대책

-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: 정화조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함
- 작업 전 환기 미실시 : 정화조 등 산소결핍위험 장소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농도가 18 % 미만일 때 18 % 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함
-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대피용 기구 비치 : 환기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, 산소호흡

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도록 해야 하고, 공기호흡기, 사다리,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해야 함

○ 관리적 대책

- 출입금지 등 안전표지 게시 : 산소결핍위험작업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
- 안전담당자 지정 : 산소결핍 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장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소농도 측정, 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등의 기구 또는 설비점검,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해야 함

○ 교육적 대책

-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소결핍의 위험요인, 산소결핍 증상, 사고 시 대피방법, 응급처치, 보호구 사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을 금해야 함

다음호에 계속